

**[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사항]**

적용 법률	정 정 전	정 정 후
<p>소득세법 제59조의 3 및 제129조 제1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득공제: <u>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</u></li> <li>· 연금외 수령시: 기타소득세 <u>22%</u> 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· <u>특별 중도해지(연금외수령) 사유</u>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<u>치료·요양</u>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상선고</li> <li>· <u>특별 중도해지 사유시</u> 과세: 기타소득 <u>16.5%</u>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금계좌 세액공제: <u>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li> <li>· 연금외 수령시: 기타소득세 <u>16.5%</u> (지방소득세 포함, <u>종합과세 가능</u>)</li> <li>· 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u>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<u>요양</u>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상선고</li> <li>· 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</u> 과세: 기타소득 <u>13.2%</u>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